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

검토보고서



2023. 6.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

검토보고서

2023. 6.
경기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
- 제출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 제출일자: 2023. 5. 26.
- 회부일자: 2023. 5. 26.
- 검토기간: 2023. 5. 26. ~ 5. 30.(5일간)

2. 제안이유

- 죽전동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하는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부지확보 방안 확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취득대상 현황

위치	지목 (사용현황)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기준가격		부지 평가금액	비고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죽전동 399	잡 (건물)	2,471.9 (1,469)	2,936,617 (1,188/m ²)	11,631	9,889,177	국방부 (기타 취득)
죽전동 71-5	잡	1,402	1,487,522 (1,061/m ²)			
죽전동 95-8	잡	26	27,586 (1,061/m ²)			
죽전동 48-4	도	12	6,240 (520/m ²)		17,460	대구시 (매입)
소계		3,911.9 (1,469)	4,457,965	11,631	9,906,637	

※ 부지평가 금액은 2023. 1. 1 기준 감정평가금액

나.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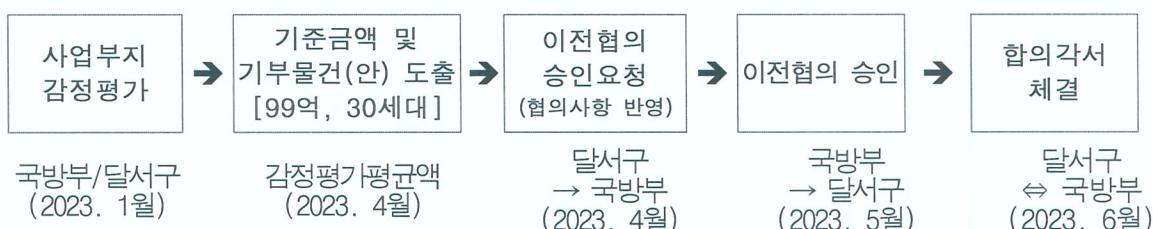
- 위치: 달서구 죽전동 399번지 일원
- 규모: A=3,911.9m²(주차대수 124면 정도)
- 사업기간: 2022. 1. ~ 2023. 12월
- 사업비: 11,500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양여재산평가금액	실시설계비	공사비 등	비고
총 액	11,500	9,900	60	1,540	
국 비	1,000			1,000	
시 비	6,455	6,425	30		
구 비	4,045	3,475	30	540	

다. 사업개요

- 국방부 소유: 기부 대 양여방식

- 국방부와 달서구가 각각 사업부지의 감정평가 실시 후 나오는 평가액인 평균 금액 99억원을 기준으로 달서구가 국방부에 대체시설(아파트 30세대)을 매입 및 기부하고, 죽전동 사업부지 취득
- 합의각서 내용 체결 시 국방부, 50사단과 협의하여 대체시설 확보



- 대구시 소유: 부지 매입

라. 예산확보 계획(안)

재원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비고
총 액	11,500	2,000	9,500	
국 비	1,000	1,000	0	
시 비	6,455	500	5,955	
구 비	4,045	500	3,545	

※ 区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교부 요청,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확보 노력

마. 추진경과

-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1. 9월
- 달서구, 국방시설본부, 50사단 사업추진방법 협의 : '21. 11월 ~ '22. 12월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22. 8. 1.
-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서 국방부 제출 : '23. 4. 19.
- 기부 대 양여 사업 이전 협의 승인(국방부) : '23. 5. 24.

바. 향후계획

- 기부 대 양여재산 합의각서 체결 : '23. 6월
- 대체시설 기부 및 사업부지 양여 : '23. 6 ~ 7월
-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23. 8. ~ 12월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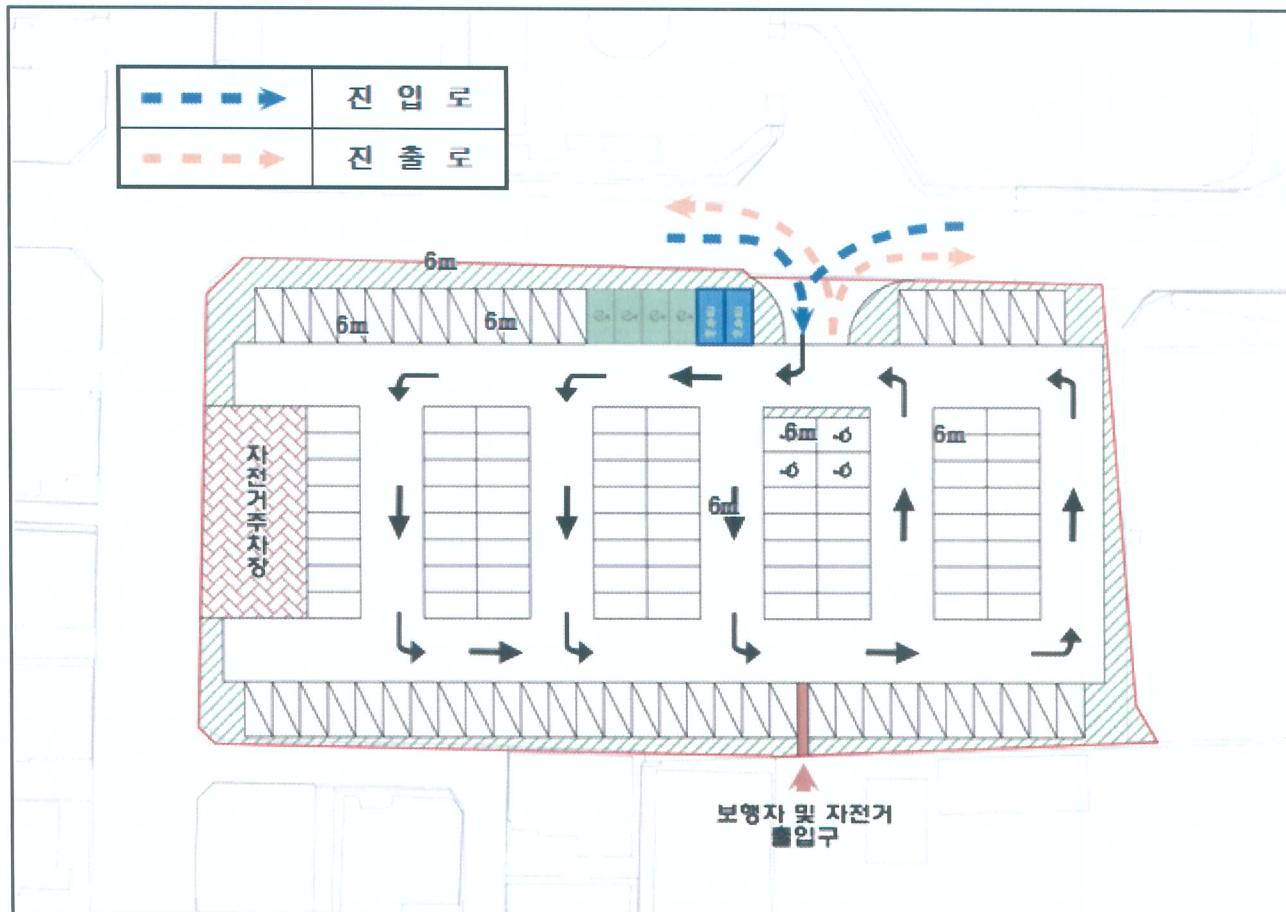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인 죽전동 399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임.
-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 2023년 말까지 소요 총 사업비 115억원(매입비 99, 설계비 0.6, 공사비 15.4)으로 부지 3,911.9m²에 주차면 12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사업부지 확보 방법으로 국방부 3필지 3,899.9m²는 소요예산 99억원으로 합의각서 체결을 통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취득하고, 대구시 1개 필지 12m²는 무상귀속협의요청 후 부지매입 형식으로 취득할 예정임.
 - 사업재원은 국·시비 확보를 통한 국비 10억원, 시비 64.55억원, 구비 40.45억원을 예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계획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변 지역이 단독주택과 원룸이 밀집하여 있고 연접하여 달서아이꿈센터가 위치하며, 대구소방본부 이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주변시설 건립으로 주차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완료 시 지역주민의 주차불편 해소에 기여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국·시비 확보 노력과 국방부와의 원만한 협의 진행을 통한 사업부지 취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임 1

죽전동 공영주차장 위치도



[공유재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를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기부 대 양여사업]

□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 · 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마. 생략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 · 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 · 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 · 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 · 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생략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부채납 기준) ①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② 협의주관기관은 국방·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와 별표1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1. 생략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